제696호 2021.6.29.(화)

협 회 일 보

KORAS 한국건설자원협회

임이자 의원, 「건설폐기물법」 일부개정(안) 발의

◇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범위 확대
◇ 순환골재 등의 직접구매제도 신설 및 의무사용 예외규정 명확화

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 대상확대 등을 위해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법률(안)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 「건설폐기물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범위 확대(안 제2조)	○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범위를 재건축·재개발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민간분야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체계 확립
순환골재 등의 직접구매제도 도입 (안 제35조의2 및 제66조)	○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해당 골재 및 제품을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매토록 하여 유통체계 확립 및 품질 관련 책임소재 명확화 ○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개선(안 제38조)	○ 순환골재 등 사용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중 불명확한 품질·경제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*을 명확하게 규정 *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이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

동 개정법률(안)이 시행되면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범위가 재건축·재개발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되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량 증가와 함께,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 미반영 등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아울러 순환골재 등의 직접구매제도 도입으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, 의무사용제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예외규정이 개선되어 순환골재 의무사용 이행률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참고로 금번 개정법률(안)은 그간 우리 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던 제도개선 사항 등이 반영되었습니다.

동 개정법률(안)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5@naver.com)해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-388호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